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6타경30297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6. 1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0.11.09.가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6. 4. 21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차취경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19.01.31.-	179,000,000		2019.01.31.	2018.12.26.		
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0.05.13.	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9.01.31. ~ 현재	179,000,000		2020.05.13.	2018.12.26.	2026.2.2.	
<비고> 차취경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.09.28.임. 차취경: 경매신청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(2022.09.28. 등기)있음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6타경30297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8-29
네오빌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56번길 13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
1층 14.828㎡
2층 123.14㎡
3층 123.14㎡
4층 123.14㎡
5층 123.14㎡
옥탑 11.70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2호
철근콘크리트조
58.3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8-29
대 167.7㎡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167.7분의 21.94

감정평가액		202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7.09	202,000,000	20,200,000
2회	2026.08.11	141,400,000	14,140,000
3회	2026.09.10	98,980,000	9,898,000
4회	2026.10.27	69,286,000	6,928,600